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31
------	-----

제출년월일 2001. 10.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적용시설(제2조) : 평창군종합운동장, 대화문화체육관, 평창공설테니스장, 궁도장, 방림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제4조)규정과 사용우선순위(제5조) 및 허가제한(제6조), 시설개방(제7조)과 개방의제한(제8조) 사용시간(제9조)을 구체화
-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제10조) 또는 이용료징수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제12조)를 명시하고 반면 감면규정(제13조)과 반환조항(제14조), 이용자손해배상(제16조)규정과 관람료 징수에관한 절차(제18조)를 명시
- 제3장 : 위탁관리 및 관리위임(제21조)규정 및 관리자 의무(제22조) 및 취소(제23조) 사유를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 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01. 6. 26 별도 의견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평창종합운동장, 대화문화체육관, 평창공설테니스장, 궁도장, 방림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내골프연습장, 체육공원내테니스장, 체육공원내 궁도장 등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라 함은 공공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사용료 및 기본 이용료를 말한다
1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말한다
13.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5. “ 청소년 ” 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를 제외한자를 말한다

16. “ 성인 ” 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2장 체육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경우 2인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타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

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수 있으며, 연간·월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각 1회로 한다.

구 분	하 계	동계(10월~다음해3월)
조 기	04:00 ~ 08:00	05:00~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9조의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1회 시간을 전

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회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⑤"별표1" 평창군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표중 연습사용료기본액 이용구분의 단체(팀)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을 말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평창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만6세미만의 어린이 및 경로대상자

②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시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 ⑦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20조(시설사용중지)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해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④군수는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22조(위·수탁관리자의 의무)①위·수탁 관리자는 평창군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위·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이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위·수탁자는 평창군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및규칙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수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계약조건을 위반한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위탁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창군공공체육시설사용요금

1. 경기장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경기장별/구분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액임 · ()내는 야간사용료임
	체육이외	180,000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체육경기	120,000	
	체육이외	180,000	
체 육 관	체육경기	100,000	
	체육이외	150,000	
테니스장	체육경기	25,000	
	체육이외	35,000	
궁 도 장	체육경기	12,000	
	체육이외	15,000	
골프연습장	골프연습	15,000	

2. 연습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 고
종 합 운동장	○ 개인	2,000	○ 2시간당
	○ 단체, 팀당		
	- 트랙 - 잔디그라운드	6,000 60,000	
테니스장	○ 1인(2시간)	4,000	
	○ 1인(월액)	30,000	
	○ 1면 1개월	100,000	
체 육 관	○ 개인 : 2시간	3,000	
	○ 단체 : 2시간	20,000	
궁 도 장	○ 개인 : 2시간당	3,000	
	○ 단체 : 2시간당	20,000	
골프연습장	○ 개인 : 2시간당	3,000	
	○ 단체 : 2시간당	20,000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품 목 별	구 분	단위수량	사 용 료	비 고
전기요금	사용시간		관허요금	○ 기본료(10,000원)+ 시간당수용 요금 × 사용요금
경기장조명	사용시간		관허요금	○ 기본료(30,000원)+ 시간당수용 요금 × 사용시간
기타부대시설	사용건수		관허요금	○ 기본료(10,000원)+ 사용건수

(별표2)

중 계 방 송 기 본 액

(단위 : 원)

종별	구분	단위	중계방송료		비 고
			T V	라디오	
체육행사,경기	국제경기	1회	70,000	30,000	○중계방송료는 중계를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국내경기	1회	30,000	15,000	
공연등행사	국 외	1회	70,000	30,000	
	국 내	1회	30,000	15,000	
체육행사이외			30,000	15,000	
영 화 촬 영			100,000		
경 기 촬 영			50,000		
○ 녹 화 ○ 라디오,녹음			TV:중계방송의 반액 라디오:중계방송의 반액		

[별표3]

상행위등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사 용 료 액	비 고
1.선전 또는 광고문 게시	○1등급(1㎡미만) : 5,000원 ○2등급(1㎡이상~2㎡이하) : 7,000원 ○3등급(2㎡초과) : 10,000원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1장당)
2.기타 선전광고 행위 (경기장,체육관등의 상업용 홍보간판 등)	○소형(3.5㎡이하) : 30,000원 ○중형(3.5㎡초과~5㎡이하):50,000원 ○대형(5㎡초과~13㎡이하):150,000원 ○초대형(12㎡초과):200,000원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1개당)
3.애드버튼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15,000원	1개월간
4. 기 타	○ 시설물의 유형, 크기 및 기간에 따라 적용	

[별표4]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	사용료징수	비 고
일반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20%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관람수입총액의 25%	
연고로한 프로경기	관람수입의 15%	

[별표5]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

구 분	초과사용료징수액	비 고
전용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가산	
연습사용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50%가산	

〈관 계 법 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4.1.7. 개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4.1.7. 개정)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94.1.7. 개정)

제 8 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99.1.18. 개정)

제 9 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94.1.7. 개정)